

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6-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3.

제 출 자 : 달 서 구 청 장  
(기획감사실장)

## 1. 제안이유

- 저소득계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건소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재가 방문복지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
- 의료보호업무가 방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## 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

## 3. 주요골자

- 6개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녀봉사관(6명)을 보건소로 정원 조정
- 구본청에서 1명을 보건소로 정원조정

## 4. 개정조례 (안) : 따로붙임.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.

##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 본 청 : 416명
2. 의회사무국 : 21명
3. 보 건 소 : 95명
4. 동 : 316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 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 및 동 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 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 및 동 에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1. 구 본 청 : 417명 2. 의회사무국 : 21명 3. 보 건 소 : 88명 4. 동 : 322명	1. 구 본 청 : 416명 2. 의회사무국 : 21명 3. 보 건 소 : 95명 4. 동 : 316명